

Sweeping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_____ (이하 “갑”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하 “을” 이라 한다) 은 Sweeping 대행서비스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 사항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 이 “을” 의 Sweeping 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Sweeping 대행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란 “을”이 본 계약에서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갑” 이 신청한 출금계좌로부터 입금모계좌로의 잔액 집금 및 제 3 조에 정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와 “핀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업무의 범위) “을” 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 무 구 분	업 무 내 용
1) 원화 집금대행 처리	“갑” 명의의 당/타행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잔액을 제 5 조 에서 지정한 원화입금모계좌로 집금대행 해주는 업무
2) 외화 집금대행 처리	“갑” 명의의 타행 외화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이하 출금계좌) 잔액을 제 5 조 에서 지정한 외화입금모계좌로 집금대행 해주는 업무. 이때, 출금계좌의 통화와 외화입금모계좌의 통화는 일치해야 함.
3) 일괄 타행계좌 거래내역 제공	“갑” 이 요청한 출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4) 실시간 타행계좌 거래내역 제공	“갑” 이 요청한 출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시마다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업무.
5) 모계좌 입금내역 제공	입금모계좌의 입금거래내역을 제공하는 업무
6)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 업무의 사전 작업인 타행인터넷뱅킹 가입신청 등을 대행해 주는 업무

제 4 조 (업무의 지정)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를 아래의 표에서 지정한다.

업 무 구 분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	핀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
1) 원화 집금대행 처리		
2) 외화 집금대행 처리	해당사항 없음	
3) 일괄 타행계좌 거래내역 제공		해당사항 없음
4) 실시간 타행계좌 거래내역 제공	해당사항 없음	
5) 모계좌 입금내역 제공	기본 제공 서비스	기본 제공 서비스
6) 네트워크 서비스		해당 사항 없음

제 5 조 (계좌의 지정)

1. “갑”은 “갑”이 사용할 입금모계좌 및 이용수수료를 인출할 예금계좌(이하 “수수료 인출계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구분	통화	계좌번호	예금주 명	사업자번호
원화입금모계좌				
외화입금모계좌				
수수료인출계좌	KRW			

2. 입금모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요구불계좌만 가능하며, 마이너스잔액을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단,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모계좌 지정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다.
4. 수수료인출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원화 요구불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갑”은 제 1 항의 예금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변경일자를 정하여 변경 7 일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

제 6 조 (업무처리)

1. “을”은 인터넷뱅킹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에 존재하는 경우 내부전산망을 사용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금은행의 출금계좌는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2.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이하 “인터넷뱅킹”이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위하여 출금은행에 인터넷뱅킹거래를 신청할 때, “본 서비스”가 적용될 출금계좌만을 출금계좌로 지정하여야 하고, 제 5 조의 입금모계좌만을 입금계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단, 제 2 항의 입금모계좌 외에 추가로 입금계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추가지정한 입금계좌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4. 해당 인터넷뱅킹 거래 계약상 제 2 항의 입금모계좌 지정이 해지, 취소되었을 경우에 “을”은 “갑”에 입금모계좌를 즉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Sweeping 대행서비스 신청서” (이하 “신청서”)에 각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출금계좌, 비밀번호 등 필요정보를 작성, 신청서를 “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출금계좌별 보안카드 및 이체카드 등은 “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갑”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계좌별 필요정보 및 카드 등을 모두 “을”에게 전달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여 통보한 시점부터 제 4 조에서 지정된 업무를 개시한다.
6. “갑”은 보안카드, 이체카드 등 중요 실물을 “을”에게 전달 시 별도의 “중요증서 인수(도)증”을 작성한다.
7. “을”은 제 5 항에 따라 개시한 각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접속 패스워드 및 이체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이 요청할 경우 변경된 접속패스워드 또는 이용자 ID를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에게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7 일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해당 타행계좌의 접속 패스워드, 이체패스워드, 비밀번호 및/또는 이용자 ID를 중도에 초기화하거나 변경, 또는 통장정리 등 기타 사무처리 (이하 “사무처리”라 한다)를 “갑”본인이 직접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사무처리를 하여 “을”의 업무에 협조한다. 다만 “을”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러한 사무처리를 “을”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할 수 있다.
9. “본 서비스”는 “을”의 영업시간 및 “갑”이 지정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시간 중에 제공되며, 출금계좌별 출금주기,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은 “갑”이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처리한다.
10. “갑”이 제 9 항 소정의 양식에 신청한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이 경우, 휴일로 인하여 출금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1 회만 집금하기로 한다.
11. “갑”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을”은 타행계좌 거래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갑”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을”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대행한 내역을 “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12. “갑”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을”에게 제공한 출금은행 인터넷뱅킹 ID를 이용하여 이체거래 등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직접 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순 조회를 제외한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터넷뱅킹 정보거래 전체를 “을”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3. “갑”의 인터넷뱅킹 계좌가 “을”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을”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사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 “갑”이 요구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이용한 집금 계좌(웹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지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갑”은 동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갑”은 대월 약정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신규 또는 변경/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Sweeping 대행서비스 신청서상의 대월약정 한도금액 항목에 한도 금액을 기재하여 대월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을”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과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자금융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
2. “갑”이 신청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통장 미정리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3. 타행의 출금 대상계좌가 없거나, 입금 지정계좌가 제 5 조에서 기술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우
4. 출금 대상계좌가 거래중지좌 편입,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
5. 출금 대상계좌의 예금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6. “갑”이 소정의 양식에 기술하여 “을”에게 제공한 타 출금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와 실제 타행에 신청한 인터넷뱅킹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여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7. 출금 대상계좌가 잔액부족, 계좌해지, 미사용 계좌, 이용자 ID 해지, 통장미정리, 장기미집금으로 인한 이체제한,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 7 항의 경우,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장기 미집금 상태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후 1 개월 이내에 “갑”이 “을”에게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대상 출금계좌에 대해 “본 서비스”를 자동 해지할 수 있다.

제 3 장 웹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

제 8 조 (업무처리)

1. “을”은 펌뱅크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에 존재하는 경우 내부전산망을 사용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펌뱅크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과 펌뱅크서비스(이하 “펌뱅크”이라한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갑”이 출금은행과 펌뱅크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 받은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본 서비스 용도가 아닌 다른 “갑”의 자체적인 업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 체결시 타행과 발생하는 수수료 정산은 월단위로 하도록 한다.
3. “을”이 펌뱅크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VAN 사 제출용 펌뱅크 이용 신청서”를 “을”이 선정한 VAN 사에 제출해야하며, “갑”은 “을”에게 VAN 사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4.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Sweeping 대행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각 출금은행의 업체코드, 식별코드, 출금계좌 등 필요정보를 작성, 신청서를 “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갑”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 계좌별 필요정보 등을 모두 “을”에게 전달한 후, “을”과 “갑”이 합의된 시점부터 제 4 조에서 지정된 업무를 개시한다.
5. 신청서 제출시, “갑”이 필요정보로 제공한 출금계좌에 대월약정이 되어 있더라도 “갑”은 요청된 일정 및 금액에 따라 “본 서비스”를 수행한다.
6.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 시간에 “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서비스 이용 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 7 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갑”이 지정한 개별 출금은행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원화집금: 은행영업일 08:00 ~ 22:00
 - 외화집금: 은행영업일 08:00 ~ 15:00
 - 타행거래내역: 은행영업일 08:00 ~ 22:00
7. “을”은 “갑”이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한 출금계좌별 출금주기,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에 맞게 “본 서비스”를 처리한다.
8. “갑”이 제 5 항 소정의 양식에 신청한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이 경우, 휴일로 인하여 출금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1 회만 집금하기로 한다.
9. “갑”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을”은 타행계좌 거래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갑”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을”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대행한 내역을 “을”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10. “갑”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을”에게 제공한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본 서비스 관련 거래는 “을”에 의하여 처리됨에 동의하며,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펌뱅크 정보거래 전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을”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사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 “갑”이 요구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이용한 집금 계좌(핀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지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갑”은 동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13.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갑”은 대월 약정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신규 또는 변경/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Sweeping 대행서비스 신청서상의 대월약정 한도금액 항목에 한도 금액을 기재하여 대월 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을”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과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자금융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과 핀뱅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외화집금처리 업무의 경우, “갑”이 신청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의한 지급허가 등을 받지 못한 거래이거나 동법 및 관련 규정등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산 장애등의 이유로 출금계좌에서의 출금 및 거래내역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타행의 출금 대상계좌가 없거나, 입금 지정계좌가 제 5 조에서 기술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우
5. 출금 대상계좌가 거래중지좌 편입,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
6. 출금 대상계좌의 예금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7. 출금 대상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8. 출금 대상계좌가 잔액부족, 계좌해지, 미사용 계좌, 통장미정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6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 7 항의 경우, 3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장기 미집금 상태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6개월 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후 1개월 이내에 “갑”이 “을”에게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대상 출금계좌에 대해 “본 서비스”를 자동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공통업무

제 10 조 (입금모계좌의 자금인출)

1. 제 5 조에서 지정한 입금모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집금 서비스를 제공한 익영업일에 인출하도록 한다.
2. 단, 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통제 및 보안)

1. “을”은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 및 입금모계좌의 관리와 운용은 본 계약에서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 한하여만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제공되는 “본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그 보안 및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에서 집금하는 출금계좌의 각 통장 및 해당인감의 보관 및 관리는 “갑”의 책임이다.

제 12 조 (수수료 및 조건)

1. “을”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요금은 처리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며, 입금모계좌 평잔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2. 매월 “갑”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조건은 서비스 기간 1 개월당 아래와 같이 약정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수료 율 및 계산방법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 무 구 분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	편뱅킹 기반의 Sweeping 대행서비스
1)원화집금대행 처리	50,000 원/출금계좌 (최대 집금횟수:1 일 1 회 집금 기준. 집금횟수 추가시 마다 5,000 원/출금계좌 추가)	30,000 원/출금계좌 (최대 집금횟수: 1 일 2 회. 집금횟수 추가시 마다 5,000 원/출금계좌 추가)
2)외화집금대행 처리	해당사항없음	100,000 원/출금계좌
3)집금모계좌 예금평잔 유지	3 억 / 모계좌	3 억 / 모계좌
4)일괄타행계좌 거래내역 제공	거래내역만 제공시 10,000 원/출금계좌	해당사항없음
5)실시간타행계좌 거래내역 제공	해당사항없음	거래내역만 제공시 10,000 원/출금계좌
6) 네트워크 서비스	50,000 원 /은행별	해당사항없음

“본 서비스”의 요금은 “갑”의 집금 건수, 금액, 집금모계좌 평잔 등에 따라 최초 계약 시 책정되며,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본 서비스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수료 납부)

1. “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갑”이 부담해야 하는 당해 월의 총 수수료를 익월 10 일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을”에게 납부한다.
2. 수수료는 “갑”이 제 5 조에서 지정한 수수료계좌에서 별도의 자금청구 절차없이 자동인출하며, “갑”은 총수수료를 출금일 전영업일 까지 아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3. 타은행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 비용은 “갑”의 해당 출금계좌에 부과된다. 타 은행과의 거래비용은 스위핑 서비스의 수수료 등의 실제 비용이다.
4. “갑”이 “본 서비스” 관련 수수료를 수수료 납부일 까지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면 책)

“을”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서비스” 제공의무 및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1. 폭동, 화재, 천재 및 기타 “을”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계고장, 회선장애 또는 파괴행위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2.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
3.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펌뱅킹, 금융결제원 공동망 및 공인인증서상의 전산장애가 장시간 발생하여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4. “갑”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거래화면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을”이 당일 중에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5. “갑”이 “을”에게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정보가 “을”의 책임없이 변경됨으로 인한 집금불능 또는 지연
6.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 6 조 제 2 항의 입금모계좌에 대하여 타행 인터넷뱅킹의 입금계좌 지정이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집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금모계좌가 아닌 계좌에 대한 입금계좌 지정이추가되어 입금모계좌 이 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7. 제 7 조 와 제 10 조 (업무처리의 예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8. 제 6 조 제 15 항 및 제 8 조 제 13 항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갑”과 “을”은 간접, 우발 또는 특별손해 및 손실(기대이익의 상실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손실이나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업무협조)

“을”은 “본 서비스”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시 그 내용을 “갑”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본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 16 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정보교환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금내역, 타행계좌 거래내역 및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
2. “을”에게 제공한 “갑”의 각행 인터넷뱅킹, 펌뱅킹, 타행 계좌 및 중요실물 정보
3. “본 서비스” 관련 “갑”이 취득한 “을”의 업무흐름 및 내용 등

제 17 조 (계약의 존속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의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 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1 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 “을”은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게 1 개월 이상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갑”이 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아래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동 기간동안에 거래의 해지통지나 기타 이의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이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갑” 또는 “을” 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 의 부도, 회생, 파산, 청산, 해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제반조건을 위반하여,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9 조 (계약의 해석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이외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한다.

제 20 조 (“ 갑 ” 의 문서에 대한 신뢰)

1. “을”은 “갑”의 모든 지시는 “갑”이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갑”의 모든 지시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 제시한 서류상의 서명이나 인감 또는 서류 그 자체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에 찍힌 서명이나 인감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갑”이 “을”에 미리 신고한 서명이나 인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조, 변조 또는 서명감이나 인감의 도용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갑”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은 “갑” 또는 “갑”으로부터 수권 받은 제 3 자가 “을”에 제공한 모든 정보, 통신사항, 지시 및 요청 (총칭하여 “정보”라 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 등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갑”이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제 1 항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갑”의 지시 및 / 또는 정보 등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별도로 조사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 “을”은 고객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 및 정보 등을 신뢰하거나 그에 따라 취한 조치로부터 입은 손해 (단,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및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청구 즉시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21 조 (책임)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을” 또는 그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당행위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갑”에 배상한다. 단, 그와 같은 손실에 “갑”, 그 임직원 및/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이 배상할 손실금액은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들며, “을”이 “갑”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아무런 손실도 보상되지 아니한다. “을”은 “을” 임직원 및 그의 대리인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갑”은 여하한의 상이한 점이나 자금 부족 및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을”에 즉시 통지하며, 장부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대사 한다. “갑”은 “을”로부터 수령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령한 일일 명세서(daily statement)를 점검하고, 예금 또는 인출이 이루어졌으나 “을”로부터 수령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모계좌 명세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예금 또는 인출에 관하여, 또는 명세서 상에 나타난 자금의 입출금 중 “갑”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출금 등을 발견한 경우 “을”에 서면으로 즉시 알린다. 만약 “갑”이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외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인 대리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을”의 권한 및 역할은 본 서비스 범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동 서비스 범위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22 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23 조(준거법)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규율 되고 해석된다.

제 24 조 (합의관할)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계약의 변경)

1. “갑” 과 “을” 은 서면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이 작성한 ‘Sweeping 대행서비스 신청서’ 및 ‘Firm Sweeping 대행 서비스 신청서’의 내용변경은 본 계약의 변경 없이 동 신청서양식의 ‘신청구분’ 항목에 ‘변경’ 으로 작성하여 변경된 내용을 “을”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첨부서류

1. 인터넷뱅킹 기반의 스위핑 업무대행서비스
 - (1) Sweeping 대행 서비스 신청서
 - (2) Sweeping 대행 서비스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 (3) Sweeping 대행 서비스관련 중요증서 인수(도)증
2. 펌뱅킹 기반의 스위핑 업무대행서비스
 - (1) Firm Sweeping 대행 서비스 신청서

(2) Firm Sweeping 대행 서비스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통의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지점
지 점 장 (인)